

2019년도 제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3. 26.(화요일), 09:4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95건(안전번호 제2019-3899~447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포털 카페 내 소셜 텍스트파일을 첨부한 게시물 1개 안건(제2019-3901호)은 부결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저작물이 마치 우리나라 역사 대하드라마인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차 회의록 4페이지의 '우리나라의'라는 표현을 '우리나라로 치면'으로, '드라마에 해당하는'이라는 표현을 '드라마에 상응하는'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며,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
- B 위원 : 문구 수정에 찬성하며, 그 이외의 의견은 없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과 관련하여 언급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문의 예시를 보고함
(해당 OSP가 실제 제공하는 메시지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OSP에 제공하는 경고 문구와 OSP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고 문구가 다름

- A 위원 : OSP가 사용하는 경고의 문구 중 시정권고의 주체는 심의위원회가 아닌 보호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작권보호위원회'라고 되어 있어 잘못된 표현으로 보임
- B 위원 : OSP에서 사용하는 경고의 문구 중 '게시물 게재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표현은 경고보다 강한 제재의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음
OSP가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때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OSP와 소통을 시도하겠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3899~4478호로 모두 895건임
우선 안건번호 제2019-3899호는 일본 만화를 무단 번역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 안건번호 제2019-3900호는 일본 만화 부록(일러스트집)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며, 안건번호 제2019-3901호는 포털 카페 내에 소설 텍스트파일을 첨부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제2019-3902~4478호는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3899호 일본 만화를 무단 번역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블로그 내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본 사안은 일반인이 실명으로 보호원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일본 만화를 무단 번역한 게시물들을 블로그에 제공한 것임
- B 위원 : 해당 작품의 인지도에 대해서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처음 보는 일본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는 알지 못함
- A 위원 : 블로그에 불법 복제되어 게시된 작품의 분량에 대해서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일본에서 잡지 내 연재 중인 만화로 게시판에는 총 30개의 게시물이 있음
- B 위원 : 본문의 후기 중 다음 화를 계속 게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강력하게 제재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후기에 다음 화에 대한 예고를 남길 뿐 아니라 매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아니지만 다른 일본 만화도 다회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A 위원 :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3899호는 게시자가 한 화의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다수의 만화 번역 게시물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3900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블로그 내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 2019-3900호는 앞의 안전과 동일한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일본 만화의 부록 일러스트집을 게시한 사안임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본래 판매되는 만화책이 아니라 부록 형식으로 제공되는 일러스트집이긴 하나, 본 제품 마니아층의 제품 구매에 시장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니만큼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음
- A 위원 : 일러스트집을 게시한 것이 원 저작물을 그대로 불법 복제하여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만화의 번역물을 게시한 것보다 오히려 침해 정도는 높다고 생각됨
해당 일러스트집은 일종의 만화 캐릭터 화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일러스트집만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별도 판매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부록이 포함된 본 제품 한정판은 약 일만삼천 원에 판매되었음
- A 위원 : 부록이 없었을 때 가격은 얼마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부록이 포함되지 않은 본 제품은 약 칠천 원에 판매되고 있음
- A 위원 : 이 부록을 블로그에 전체 공개를 했을 때에는 한정판의 판매 전략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3900호는 부록 포함 여부에 따라 상품 간의 가격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3901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캡처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3901호는 일반인이 실명으로 보호원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포털 카페 내 소셜 텍스트파일을 첨부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 A 위원 : 게시물을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비공개 카페이므로 보호원 직원이 가입을 할 수 없었고 일반인이 신고사이트에서 신고할 때 첨부한 캡처화면을 통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
- B 위원 : 게시자가 한 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이라고 적었으므로,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민원인의 신고할 당시의 캡처화면을 봤을 때 합법 시장에서 판매되는 저작물과 일부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3901호 게시물은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만장일치로 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3902호~제2019-4478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19-3902호~제2019-4478호 게시물은 모두 웹하드를 통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B 위원 : 특정 음원파일의 불법복제물이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건은 특이하게 웹하드에서 무료(FREE) 포인트로 음원파일이 제공되는 경우로 보임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압축파일 화면을 제시하면서)음악 불법복제물의 경우 대부분 1개의 게시물 안에 많게는 수백 개의 음원이 압축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 동일한 게시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웹하드에서 자주 보이는 게시자가 있는데 예전에 수 차례 계정정지를 했었던 헤비 업로더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902호~제2019-4478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위원 건의사항)

- A 위원 : 아울러 일반인의 민원 건에 대한 보호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금번 심의 안전 가운데 일반인 민원 건이 심의에 회부되기까지 소요된 일수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일반인이 신고한 일자와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일자 간에 약 1개월 정도 시간적 격차가 있음
- B 위원 : 심의 요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

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 신고일로부터 보호원이 심의 요청까지 통상적으로 3~5일정도 걸리는데, 해당 건의 경우 1달 넘게 걸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음
- A 위원 : 민원 해결의 시간적 지체로 인한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원 담당부서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건이 있었는데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호원 뿐 아니라 우리 심의위원회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
- B 위원 : 보호원의 시스템 부재가 원인일수도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원인 신고가 심의에 회부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을 담당자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해당부서 팀장에 먼저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시정 요청을 하겠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전체심의위원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겠음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3899호~제2019-3900호 및 제2019-3902호~제2019-447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3901호 게 시물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2.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